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매각결정 통지

아래와 같이 매각결정을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공매재산을 취득
하시기 바랍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84조 및 제84조의2).

매수인	성명 (상호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(사업장)			
채납자	성명 (상호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(사업장)			
공매재산의 표시				
매수대금				
매수대금 납부방법	[] 전액납부		[] 차액납부	
대금납부기한	년 월 일 * 매수대금을 차액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, 배분기일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			

다만, 매수대금 납부 전에 채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
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발신명의 직인

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(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
이의신청(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, 30일 내 처리)을 거쳐 심사청구(국세청, 90일 내 처리) 또는 심판청구(조세심판원,
90일 내 처리)를 하거나,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
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